

전자상거래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국·내외의 비교연구

Protection of Private information in Electronic Commerce

정종수(Cheung Chong Soo)*

요 약 (ABSTRACT)

지난 2001년 11월 도하에서 DDA(뉴라운드)가 출범하여 서비스 분야가 국제 교역의 범주에 들었다. 이렇게 급변하는 세계질서에 전자상거래도 예외가 아니다. 흔히 21C는 세계화, 지식화, 정보화 시대로서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NETWORK, OPEN, FU-PLEX(융복합화)가 필수적이다. 때문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신경망인 초고속인터넷망의 구축이 필연적으로 요구되어 우리정부도 이 분야를 집중 육성하여 2002년 11월 1일 현재 1천만의 가입자를 갖는 세계 1위의 인터넷 강국으로 성장하였다.

하지만, 이에 따른 역기능으로 전자상거래를 포함한 사이버거래에 있어 발생하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문제들이 급격히 대두되고 있어 상당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의 강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에 있어 상당한 수준을 갖추었다고 알려져 있는 독일과 미국의 사례를 연구하여 법적인 대안과 전자기술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이외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대하여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해야만 할 것이다.

Through the new round DDA(Doha Development Agenda) negotiations which started in Doha/Qatar conference in November, 2001, service industries have been included in the category of international trades. An electronic commerce cannot be exceptional in this field. The 21st century is largely recognized as the era of globalization, knowledge, and information. To make effective and competitive strategy in this century, it is essentially required to organize Network, OPEN, and FU-PLEX. That is why our government also has been promoting this field since years before, now 10,000,000 people in Korea have joined superhighway internet networks. Korea became the top internet-developed country in the world.

As a side-effect of this internet spread into our life, however, there is serious problem we are now faced against. That is the outflow of private information through electronic commerce and other cyber transactions. It has caused many social problems to be rapidly on the rise these days. We are now desperately required to struggle continuously to make a solution for that. Taking the precedent case of Germany and United States which are currently recognized as high-leveled country in protection of private information, we have to come up with legal and technical measures and at the same time, to escalate the social consciousness about private information protection.

Key Word : 전자상거래, 개인정보보호, 융복합화(PU-FLEX), 고객관계관리(CRM)

* 한세대학교 행정지원처장 (경영학 박사)

| | 목 차 |
|-------------------------------------|-----------------------------|
| I. 서론 | IV. 선진국과 국내의 개인정보보호 비교 및 대안 |
| II. 전자상거래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현황 | V. 결론 |
| III. 전자상거래에서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문제점 | 참고문헌 |

I. 서론

21세기는 흔히들 세계화, 지식화, 정보화 등의 흐름이 주도하는 세기라고들 한다. 다민족, 다언어, 다문화 등의 세계화는 폐쇄체제에서 개방체제로의 변화가 일고 있음을 익히 알려주고 있으며, 디지털시대로 접어들면서 지식은 정보지식사회라는 신세기의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즉 정보망을 통한 정보지식사회라는 것이다. 이러한 정보망이란 인터넷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또 이를 이용해 급속도로 발전을 하면서 지식기반 사회로 발돋움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21세기를 지식미디어, 지식네트워크, 지식인큐베이터로 집약될 수 있다¹⁾고 한 것처럼 지식기반 사회 구축과 지식의 창출을 통한 정보화의 융합이 21세기 정보화 사회의 과제일 것이다. 이와 같은 지식을 바탕으로 한 정보화는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인터넷의 확산으로 이어져 인류는 새로운 변혁기를 이미 맞이하였다. 이렇게 21세기는 정보와 밀접한 관계 속에서 세계화와 지식화를 지향하고 이를 융합,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들이 지향해야 할 길이라고 하겠다. 이와 같은 길은 인류가 발전하는 과정을 통해 여러 가지의 요소를 필요로 하게 되는데 우선 세계화를 위해서는 개방이 필수이고, 다음으로 지식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정보 등의 네트워크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만 하며, 이런 일련의 모든 것을 집약하고 재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융합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21세기에 세계화와 지식화, 정보화를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사회가 NETWORK, OPEN, FU-PLEX(융복합화)²⁾ 되어야 만 한다. 이러한 지식과 정보를 시시각각으로 급변하는 사회에 제공하고 그 대안을 연구·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정부는 후발주자로서 정보전송의 길의 역할을 하는 초고속인터넷망을 집중 육성하여 선진국을 앞서가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 초고속인터넷망의 확장 정도는 98년도 10000가구의 가입을 시작으로 불과 4년 만에 2002년11월1일 현재 1천만의 가입자를 달성하여 이 분야 세계 1위로 성장하는 괄목할 만 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와 같은 초고속 인터넷망의 획기적인 확산과 발전을 기반으로 한 전자상거래는 인터넷을 통하여

1) Hyun Chon Lee, The new era of Televersity and Andravarsity in the Campusless Society: Virtual university and its implication in Korea , Europea Academia conference, Sweden, 1999

2) 선진국에서는 이미 클러스터(Cluster)를 통하여 세계적인 IT강국을 만든 예가 있다. 스웨덴의 시스타 사이언스파크, 핀란드 올루테크노파크, 미국의 실리콘벨리 등 IT산업의 클러스터로 성공한 곳의 특징으로는 첫째, 적대적 관계가 아닌 개방(OPEN)화 되어있다 점, 둘째, 관·산·학이 서로 네트워크(NETWORK) 된다는 점, 셋째, 이 모든 것이 융합(FUSION)적으로 복합(COMPLEX)되어진다는 점이 공통적이었다. 여기에서 필자가 영문의 융합과 복합을 합하여 만든 것임.

기존의 시장이 갖는 지역적, 공간적인 한계를 극복하여 상품이나 서비스 등의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미래형 경제활동 수단으로 급격히 발전하였다. 기존의 재래시장 기능을 점차 대체해가고 있으며 이전과는 다른 신개념의 가상공간의 시장을 형성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에 따른 이익이나 장점 못지않게 제기되고 있는 것이 전자상거래의 순기능에 대응하는 역기능에 관한 것이며 그 중 가장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이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이를 이용하는 개인에 대한 정보의 보호에 관한 것이다. 하지만, 전자상거래라는 것이 그 특성상 개인과 개인 또는 기업과 개인, 기업과 기업, 국가와 기업 등을 정보로 연결한 정보네트워크를 이용한 것이며, 이것은 반드시 사용자들간에 또는 제공자와 사용자간에 상호 확인이나 인증, 계약, 거래를 위한 개인정보의 제시가 필수 불가결하게 요구되고, 또 비용이나 대금의 결제에 있어서도 반드시 은행구좌나 비밀번호의 제시가 필요하고 신용카드의 번호나 비밀번호 등의 제시도 필요할 수 밖에 없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개인의 정보를 이용하지 않을 수는 없게 되어있다는 것이 정보화 사회에서의 특징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이렇게 제공되어진 개인의 정보들은 각 개인들에게 정보의 제공을 요구한 해당 기업이나 사이트운영자들과 인증기관, 전자결제시스템제공업자, 전자화폐제공업자 등에 의해 다루어지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유출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디지털신호화 된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그 유출 흔적이 남지 않기 때문에 이를 발견하거나 정보 유출자를 색출하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또, 만일 전자상거래를 위해 제공되어진 개인의 신용정보나 일반정보들이 유출되어 범죄나 기타 다른 용도로 사용된다면 많은 피해가 있을 것인데, 이때의 피해는 전자상거래를 통하지 않는 일반적인 개인정보의 유출과는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그 피해의 위험이 높다. 즉, 사이버쇼핑, 인터넷뱅킹 등의 전자상거래를 통해 상대업체 측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일반개인의 정보가 만일 유출되어서 이것이 인터넷상에 유포된다면 그 피해는 가히 엄청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는 전자상거래에 있어 개인의 정보보호에 관한 제도적 장치나 기술적 장치들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오고 있는데, 특히 1980년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프라이버시보호 및 개인정보의 국제적 이전에 관한 가이드라인'³⁾을 채택해 각국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입법과 제도를 마련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세계 최고의 인터넷 사용국가라는 명성에 걸맞게 수많은 전자상거래를 위한 사이트들이 등장했고, 기업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 운영하는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이런 사이트를 이용해 쇼핑을 하거나 금융거래를 하는 등 전자적인 경제활동과 사이버 커뮤니티를 구축하거나 이에 참여하며 활동을 하는 인구와 그 빈도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 상의 제반 활동 증가에 비례해 개인정보의 유출도 매우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이것이 상당한 사회문제화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의 강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개인정보보호에 있어 상당한 수준을 갖추었다고 알려져 있는 주요선진국들과 한국을 비교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체계와 관련법 등을 비교하고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문제점들을 고찰하고 대응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전자상거래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현황

3) OECD, Guidelines on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border Flows of Personal Data, Paris 1980

1. 국내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도

정보의 보호는 비밀성, 무결성, 가용성 등을 보장하는 것으로 내부 또는 외부의 침입자들로부터 정보의 파괴, 위·변조, 불법유출 등의 범죄행위로부터 정보를 보호하고 건전한 정보유통의 질서 확립과 정보의 부정적인 측면을 예방·방지하는 것에 있다고 하겠다.⁴⁾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법령에는 정보통신부 소관 법령이 있을 뿐 만 아니라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문화관광부, 과학기술부 등에도 소관 법령을 두고 있어 서론에서 서술한 것처럼 폭넓게 정보보호와 관련된 법과 제도적 장치가 유관부서들 간에 네트워킹 되고 융합화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사회정보화 추진을 위한 기본법으로 1995년 8월 제정되고 1999년 1월에 개정된 ‘정보화촉진법’이 그 기본이라고 하겠다. 여기에서 보다 세분화되어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법·제도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개인행정정보보호, 개인신용정보보호 등의 개인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통신비밀보호법’ 등에서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이처럼 정보보호는 법, 제도, 산업, 기술, 국민의식 등 여러 다양한 측면에서 상호보완적이며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만 보다 더 정보를 정확한 용도로 적정하게 사용 및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은 2001년 1월에 개정되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내용을 대폭강화하고 있는데, 그 주요 개정내용⁵⁾은

첫째, 개인정보보호규정의 적용대상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실질적인 개인정보보호 일반법을 마련하였다. 개인정보보호 의무조항의 적용대상자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외에도 각종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면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자까지 확대하여 민간부분의 개인정보가 포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개인정보처리 위탁과 영업의 양수 등에 따른 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수집·처리·관리하도록 위탁하는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위탁받은 사람을 그 업무의 범위 내에서 사업자의 소속직원으로 보아서 위탁받은 사람의 개인정보보호규정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서비스 제공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셋째, 이용자의 자기정보에 대한 접근권과 통제권을 최대한 보장하였다. 개정법에서는 개인정보보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및 정정요구권 등의 통제권을 신설·강화하는 한편, 이러한 권리를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하여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하거나 약관에 명시하도록 하였다.

넷째,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보호제도를 신설하였다. 아동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에 이들의 개인정보를 적절히 보호해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데, 개정법에는 서비스제공자가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 아동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였다.

다섯째, 개인정보 관련 분쟁을 신속·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즉, ‘개인정보분쟁조

4) 이대기의 3명, “국내 정보보호관련 법규 분석”, 정보보호학회지, 제12권 제4호, 2002, 08. 75면.

5) 정보통신백서2001, 대한민국정보통신부, 2001년, 85-86면.

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정보보호와 관련한 관련 법규를 계속해서 제정 및 개정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때에 법규가 마련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개인이나 산업, 국가차원에서 피해를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급격히 정보화되어 가는 사회에 있어 새롭게 나타나는 제 상황에 대한 새로운 법규의 제정이나 개정이 신속성과 유연성을 가져야 만 하는 이유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 그 중 한 가지를 들어보면, 유럽국가들에서 상용화되었던 국제전화 서비스 가운데 한가지인 콜백시스템⁶⁾이라는 국제전화 서비스를 90년대 초에 외국의 한 회사가 한국내 지사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서비스를 시작 하였었다. 한 면은 당시에는 합법적인 서비스였으나 막대한 요금이 신용카드를 통해 결제가 되므로 인해 상당한 금액의 외화가 외국으로 반출될 수 밖에 없었다. 정부에서는 신용카드 결제로 관련된 부처와의 마찰과 함께 국제간 통상문제까지 이어졌던 적이 있었다. 또 다른 면은 이용자들이 저렴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이에 대한 관련 법규가 없었기 때문에 해당 회사에 대해 권고 밖에 할 수 없는 실정이었고 이용자들에게도 어떠한 안내를 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관계법령의 미비로 인하여 산업과 개인에 대해 시의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법치국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기업과 개인의 필요에 적절히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관련된 법들에 대해서는 산업의 발전 속도와 사회의 필요에 따른 법 제정과 개정이 우선 되어야 사회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하겠다.

2. 개인정보의 유출 형태

1) ON-LINE상에 의한 유출

인터넷은 기본적으로 열린 구조(open architecture)를 갖는 불특정 다수 컴퓨터 및 각종 정보통신 관련 기기들의 네트워크이다⁷⁾. 이런 인터넷상의 이용자들 간에는 상호 비대면으로 통신을 하기에 진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용자와 함은 '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로서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식별이 되는 당해 정보의 주체를 말한다' 라고 개인정보보호지침의 제 2조에 정의하고 있다. 2002년 정보통신부 자료⁸⁾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1999년에 30조원, 전자상거래(전자상거래 매출/ 전체 매출) 3.2%, e-마켓플레이스 30개, e-비즈니스투자 8,447억원 이었던 것이, 2000년에 전자상거래규모 58조원, 전자상거래율 4.5%, e-마켓플레이스 170개, e-비즈니스투자 11,890억원으로 늘어났고, 2001년에 와서는 전자상거래규모가 115조원, 전자상거래율이 8.8%, e-마켓플레이스 260개, e-비즈니스투자 11,040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앞으로 이런 추세를 토대로 해 시장규모를 추정해보면 2004년에는 2000년에 비해 7배 정도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디지털 경제에 의한 상거래 활성화에 따른 순기능뿐 만 아니라 이에 수반하여 역기능이 동시에 초래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인데. 이러한 역기능 중에도 개

6) "국가간 통신요금이 징수국에 따라 차이가 나는 현상을 이용하여 징수요금이 높은 국가의 가입자의 국제통화를 역방향으로 완료시키는 중계 서비스" - 컴퓨터 전화 가운데서 가장 먼저 알려진 것이며, 국제간 대체통화수단으로서 콜백이 인터넷 폰보다 앞서 등장했었고, 기존 일반전화를 기반으로 파생된 국제전화 대체통화수단임. 예: Telepassport, Viatel

7) 이재규의 4명, 「전자상거래 원론」, 법영사, 2002, 제3판, 526면.

8) 전자상거래 촉진방향. 정보통신부, 2002, 10, 5, 2-6면.

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는 한 조사의 결과 소비자의 75.1%가 인터넷 서비스의 안정성과 보안성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나타나 매우 우려할 만한 상황이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주로 개인의 정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메일주소, 집주소, 집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직장주소 등으로 대략 평균 7.9개의 항목으로 조사됐다. 또, 이 조사에 따르면 이용자들 중 86.7%가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비스 제공자의 입장에서 서비스의 다양화와 각각의 개인에 적합하고 신속한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서 또는 CRM⁹⁾ 구축 등의 많은 개인정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많이 요구하고 있다. 때문에 서비스의 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에서 뿐 아니라 개인정보가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므로 이용자들이 개인정보의 유출을 가장 염려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일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점이 양자간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임과 동시에 해결해야 할 최대의 관심사 인 것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2000년 12월 전자 상거래 소비자 보호 지침에 근거해 인터넷 쇼핑몰 업체들의 소비자 보호 준수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용자들이 개인정보의 제공을 꺼리는 것들을 살펴보면 예금계좌번호(81.4%), 신용카드번호(78.3%), 주민등록번호(77.9%), 집주소(51.6%)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사이버상에서 비대면 방식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는 점이 매우 위험스럽다고 느끼는 이용자가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⁰⁾).

개인정보를 유출하게 되는 여러 가지의 형태 중 한 가지는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너무 쉽게 관리하고자하는데서 기인하는 것이 많은데, 즉, 인터넷상에 가입된 동호회나 인터넷 뱅킹을 포함한 전자상거래시의 비밀번호를 한가지로 통일해서 사용하고 있거나,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비밀번호를 같은 것으로 갖고 있는 경우 등이 있을 것이고, 또, 이와 관계된 것으로 비밀번호를 만들 때 자신과 관계된 의미있는 숫자들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 즉, 주민번호, 전화번호, 생년월일, 차량번호 등을 사용해 비밀번호를 만들 경우 이런 비밀번호의 경우 유출이 매우 용이하며 또 이에 따른 개인정보의 유출 또한 매우 용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외에도 공인된 인증서를 제시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사이트들에 무분별한 가입을 하면서 상세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따라 이 것이 임의로 가공 또는 유출되는 피해를 볼 위험도 점차 높아져 가고 있다. 실제로 근래 들어 어느 정도 공신력을 인정받는 사이트라면 대부분 국가나 인증업체와 연계된 공인인증서를 통해 개인정보를 암호화 해 제공받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제공받은 개인 정보에 대해서도 약관이나 관련 법규에 정한 용도이외에는 활용치 않을 것을 공지하고 있는데 반해, 이러한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곳은 개인정보의 유출의 위험을 갖고 있는 곳이라 할 것이고, 결국, 개인들이 이러한 곳에 가입하고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여 발생하는 정보의 유출도 빈번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못해 일어나는 정보의 유출이 있는데, 너무나 많은 곳에서 비밀번호를 요구하고 있어 이에 따라 상당한 양의 비밀번호를 갖고 있는 경우 또는 비밀번호나 개인정보의 유지·관리에 익숙하지

9) 고객관계관리 [顧客關係管理,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 고객과 관련된 기업의 내외부 자료를 분석, 통합하여 고객 특성에 기초한 마케팅 활동을 계획하고, 지원하며, 평가하는 과정으로, CRM을 통해 고객 데이터의 세분화를 실시하여 신규고객 획득, 우수고객 유지, 고객가치 증진, 잠재고객 활성화, 평생고객화와 같은 사이클을 통하여 고객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유도하며 고객의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을 통하여 마케팅을 실시한다.

10) <http://safe.cpb.or.kr/textdata/HOME/PAGE/200104/0100074/2001.htm>

많은 노년층의 경우 비밀번호나 개인정보를 별도로 기록하여 관리하는 수가 있는데 이를 타인에게 자의든 타의든 공개하게 됨에 따른 정보의 유출이 있을 수 있다. 한솔엠닷컴과 한국통신프리첼이 가입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개인정보를 제휴사인 삼성카드(주)에 제공하고 공유하여 공동마케팅에 활용하는데 대한 감사원의 지적 사례는 개인정보가 얼마나 쉽게 이용되는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게 하는 사례들 중 하나일 것이다.

온라인상에서 개인정보유출의 또 한 가지 형태는 바로 해킹에 의한 것인데, 해킹이란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정보처리장치 또는 정보처리조직에 침입하거나 기술적인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정보처리장치가 수행하는 기능이나 전자기록에 합부로 간섭하는 일체의 행위를 가리키는 것인데¹¹⁾, 해킹의 핵심적 요소는 권한이나 허락을 받지 않은 자가 접근 코드나 패스워드를 풀어버리는 방법을 통하여 타인의 컴퓨터시스템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컴퓨터를 사용한다는 것이다.¹²⁾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의 유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인데, 첫 번째는 개인정보를 얻어 낼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집적되어 있는 사이버 공간에 직접해킹을 하여 한 개인이나 불특정다수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훔쳐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최근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으로 바이러스에 의한 해킹과 개인정보의 유출을 들 수 있다¹³⁾. 이 경우가 첫 번째의 것과 다른 것은 첫 번째의 경우는 개인정보를 훔치려는 해커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직접 개인정보를 빼내가는 것이나, 두 번째의 방법인 바이러스에 의한 것은 개인정보를 특별히 빼내려고 하는 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즉, 인터넷에 연결된 개인들의 컴퓨터에 이메일 등의 메개체를 통해 침입한 바이러스가 그 컴퓨터 내에 저장되어 있거나 그 컴퓨터의 사용자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 이를 기록하여 다른 사람이나 다른 공간에 임의로 공개하는 식의 불특정한 개인의 정보를 불특정인에게 또는 공개된 사이버상의 공간에 유출하는 식의 방법으로 이것은 메일 등을 통해 전파되므로 그 피해의 정도가 대단히 크며 그 피해확산의 속도 또한 엄청나다.

2) OFF-LINE에 의한 유출

ON-LINE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개선되어지고 있으나 OFF-LINE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은 아직까지도 상당히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 주5일제를 실시하는 기업들이 확산되면서 많은 직장인들이 휴일에 여가 활동을 즐기는 일이 보편화되어가고 있고 이와 관련된 업체들이 호황을 누릴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들인데, 이와 관련된 업체는 주로 레저산업, 항공, 여행업, 호텔 등의 업종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되어진 업체들이나 이에 수반한 제휴업체 들에 대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개인이나 업체도 늘어날 전망이다. 간단한 예로 항공기를 이용한 출장이나 여행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여행사나 항공사에 이용자들이 자연스럽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보들의 보안이 얼마나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보장은 이용자에게 충분히 설명되어지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일들과 관련된 피해사례¹⁴⁾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모 이동통신은 이동전화 가입자들

11) 최영호, "정보범죄의 현황과 제도적 대처 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8.61면

12) Grabosky/Peter N./Smith, Russel G."Crime in the Digital Age," Transaction Publishers. The Federation Press,1998,30면.

13) http://www.hackersnews.org/data/2002/09_1/0920_10.html, 송재영기자, 2002. 9.20

14) http://www.ned.co.kr/SITE/data/html_dir/2002/08/20/200208200102.asp (내외경제 사설)

의 개인정보를 본인 허락 없이 이용해 무선 인터넷 서비스에 무단 가입시킨 행위와 관련해 참여연대가 개인정보를 유출한 이 회사를 상대로 사상 최대 규모의 피해보상 청구소송을 준비 중이며, 이 회사는 2001년 10월 자사의 무선 인터넷 서비스 가입을 권유하면서 고객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대리점을 중심으로 무단 가입시키면서 시작했다. 더욱이 이 회사만 그런 게 아니다. 다른 이동통신회사에서도 최근 휴대전화 가입자의 고객정보와 통화내역을 유출한 혐의로 대리점 직원 등 세 명이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또 한 지방은행에서 유출된 고객의 개인정보가 신용카드를 불법 복제해 현금인출 등 불법행위에 사용된 사건도 있었다. 모두들 기억하는 지존파 사건도 결국은 백화점 직원이 매년 '우수고객 명단'이 유출되면서 시작되었던 것이다. 2002년 11월 12일 서울지법은 "집배원 백모씨가 편지 내용을 발설해 피해를 봤다"며 이모씨가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백씨가 편지 내용을 발설해 이씨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며 피고 국가는 원고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는데 그 이유는 백씨는 2000년 10월 이씨가 보낸 편지를 되돌려 보내는 과정에서 편지 내용을 알게 됐으며 편지를 반송받은 이씨가 우체국에 편지 개봉 사실을 여러 차례 항의하자 사연을 묻는 동료들에게 편지 내용을 말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되었기 때문이었다. 노숙자의 주민등록증을 탈취 또는 돈을 주고 이용하여 사이트를 개설 상거래를 하거나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등 본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등의 피해 사례도 있다. 이렇게 우리들이 영위하고 있는 일상생활에서도 개인 정보의 유출은 흔한 일이 되었고 역시 이에 따른 소송이나 대처에 관한 일들이 자주발생하고 있다.

3) 공공기관에 의한 유출

정보화 선진국이라고 자부하는 우리나라는 정부의 고객인 국민의 요구에 따라 국민들과 상호작용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데 정보기술을 사용하는 전자정부를 2002년 11월 13일 청와대에서 출범시킨다는 것을 공표하고 시연을 진행 한 바 있다. "전자정부"라는 용어는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데 정보기술을 사용하고자 한다"라고 발표한 데서 유래한다¹⁵⁾ 전자정부는 21세기의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수단으로 인식돼 세계 여러 나라가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 프로젝트들 중 한가지로 행정서비스에 전자상거래 방식을 적용해 국가기관이나 일반 관공서등에서 그 동안의 서류 중심의 관행을 지양하고 이를 온라인 체제로 전환함으로써 행정서비스에 소요되는 사회적 제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국가행정 서비스의 수용자인 국민들의 편의를 대폭제고하고, 국가의 경쟁력을 한층 높이지는 데 그 뜻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주민등록등초본·호적등초본·토지대장등초본·지적도·사업자등록증 등 실생활에 필요한 393종의 증명서류를 전자정부 사이트에서 신청해 우편, 택배 등 물류회사를 통하여 가정에서 받아볼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4000여종의 민원은 구비서류와 처리 절차 등을 인터넷에서 알아볼 수 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사례들을 열거해보면 국세청, 서울시 등 공공기관 컴퓨터에 들어있는 일반인들의 소득과 재산정도, 신상기록 등을 몰래 빼내 상품광고지 발송에 활용해온 정보대행사들과 돈을 받고 이들에게 자료를 넘겨준 공무원 등이 검찰에 적발된 사례가 있으며, 이때 유출된 전산 자료는 소득세 과세자료, 신용카드 가입자 신상명세서 등 292만 건이었다고 한다.¹⁶⁾ 또한

15) 백광훈, "인터넷 범죄의 규제법규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00-16, 64면.

주민등록을 열람하여 가족상황을 파악한 후 독신녀의 주거지를 범피대상으로 정한 사례, 의료보험 관련 자료가 유출되어 선거에 이용된 사례 등¹⁷⁾이 있는 것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의식수준을 나타내는 사건¹⁸⁾으로 얼마 전 Y구청이 부부가 된 두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 혼인신고서를 이면지로 사용해 주차대장으로 쓰고 있어 문제가 된 적이 있다.

이와 같이 공공기관의 행정서비스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 관계없이 상당히 개선되어 간다고는 하나 이러한 편의성제고라는 순기능에 비해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의식과 노력이 현저히 개선되지 않는 이상 위와 같은 사례들의 재발이 없다고 단정 할 수 없기에 전자정부와 같이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을 통해 국가전산망이나 행정전산망과 이에 수반하는 관련 사이트들에 개인의 정보가 제공되고 공유되게 됨에 따른 역기능도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쉽게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III. 전자상거래에서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에 관한 문제점

1. 전자상거래에서의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Privacy)의 사전적 뜻은 개인의 사생활이나 집안의 사적인 일, 또는 그것이 공개되지 않고 간섭받지 않는 개인의 자유를 뜻함.) 즉, 사생활을 함부로 공개 당하거나 침해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의미한다. 때문에 사이버상에서도 개인만의 공간으로서 타인에게 노출되거나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이 전자상거래에서 일어나고 있어 피해유형을 피해주체별로 살펴보면 통신서비스에 의한 피해, 표시·광고에 의한 피해, 제품과 관련한 피해, 배송과 관련한 피해, 사기성 사이트로 인한 피해, 이용자 실수로 인한 피해, 개인정보의 누설, 악용 및 프라이버시 침해관련 피해, 해킹 피해 등으로 나뉘볼 수 있다. 이러한 유형중 개인정보의 누설, 악용 및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인터넷을 통한 제 활동이나 온라인, 오프라인의 경제활동에 있어 개인정보의 이용은 그 중요도가 급격히 강조되고 있는데 이는 개인정보가 단순히 한 개인을 구분 짓는 특성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디지털 신호화하여 데이터로 제공되어지는 순간부터 개인정보는 컴퓨터 온 라인·네트워크를 통해 이뤄지는 생산, 유통, 판매 등에 있어 거래 상대의 확인과 인증 및 결제에 있어 신속성과 효율성을 배가시키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를 포함한 사이버상의 활동에 있어 발생하는 계약관계를 성립시키기 위한 매개체로서 개인이나 기업들의 필요에 즉시 반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인의 정보는 보다 광범위하게 또 가능한 정확한 정보들을 요구하게 되어져 가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현상은 정보화 사회를 살아가는 개개인들에게 이상과 같은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 순기능 외에 이런 개인의 정보들이 당초의 목적과는 다르게 쌍방간의 약관이나 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불법적인 용도로 유출되거나 사용되어지게 된다면, 이 정보는 해당 정보의 주인인 그 개인의 것이 아니라 불법적으로 도용한 정보를 악용해 금전적인 부당 이익을 도모하거나 악의적인 반사회적

16) 한겨레신문, 1994년 6월 24일 17면

17) 서유창, "개인정보보호법, 재정배경과 시행성과", 수사연구, 1996. 4, 17면

18) <http://www.ohmynews.com/>, 2002/10/16, 강우영

용도에 사용할 수도 있게 될 수 있기에 이런 경우에는 당초 선의의 목적으로 제공되었던 “특정 개인의 개인정보”가 아니라 불법을 자행하는데 쓰이는 불법 도구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며, 이것은 결국 원 보 제공자에게는 물질적, 정신적 피해는 물론, 사회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급격히 고도화되어 가는 정보화 사회에서 개인의 정보를 수집하고 추적하며 이를 이용하는 제부분에 대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는데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프라이버시”라고 하는 것은 특정개인의 지극히 사적인 개인의 사생활을 뜻하는 것인데 19세기 말엽부터 프라이버시는 이런 단어적인 개념에서 보다 심화하여 “혼자 있을 권리 또는 혼자 자유로이 있을 수 있는 권리(the right to be let alone)”로 정의¹⁹⁾되어졌고, 이후에 뉴욕주가 최초로 프라이버시법을 제정하였으며, 1965년 미국 연방 대법원은 프라이버시권을 헌법적인 권리로 인정하였다. William Prosser는 프라이버시의 침해는 개인의 사사(私事)에 대한 침입과 개인의 난처한 사사의 공개, 공중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사사의 공표, 성명과 초상(肖像) 등 사사의 영리적 이용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²⁰⁾한 바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그동안 개인의 사생활 보호의 개념으로만 쓰여 왔던, 즉, 혼자있을 권리에 대한 보호의 의미로만 쓰여 왔던 프라이버시권이 이제는 인터넷이나 온라인 상의 네트워크로 인해 전통적으로 주장되어 왔던 개인의 사적인 정보들 뿐만 아니라 온라인이나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개인들의 정보가 수집되고 이용되고 있는 모든 곳에서 이 정보가 다른 사람들에게 유출되는 것, 또는 당초의 목적과는 다른 용도로 부당하게 사용되어 그 정보의 주체에게 물질적, 정신적 등의 피해를 끼칠수 있게 됨에 따라 그동안 사용되어 왔던 프라이버시권의 보장 내지 프라이버시의 보호에는 한계가 나타나게 되었다.

현재는 “프라이버시”란 개인의 사적인 생활이나 그 개인의 지극히 사적인 상황이나 상태를 뜻하는 것으로 개념적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는 그 개인의 고유한 속성을 규정짓는 정보화된 것으로 개인정보란 단순히 한 개인으로부터 분리되어 존재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정보를 만들고 제공하는 개인의 통제지나 그 개인정보를 취합하고 다루는 권한을 가진 사람에 의해 통제가 가능한 객체로서의 이행되어지는 것으로, 개인의 신념, 신체, 재산, 사회적 지위, 신분 등에 관한 사실과 판단 및 평가를 나타내는 모든 정보를 뜻하는 것이 개인정보인데, 개인의 인격적 권익에 심대한 침해의 위협을 줄지 모르는 고도정보화 사회의 도래에 따라 프라이버시의 개념이 전통적인 “사생활”로부터 “개인정보”로 변천되어가고 있음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하고 이에 더하여 개인의 정보에 대한 개인의 통제권을 법적으로 승인한다는 것에 대한 것은 그 개인이 직접적으로 결정하여 사회적 또는 개인적인 필요에 대한 충족을 얻기 위해 행하는 모든 방식의 개인정보의 제공과 이에 따른 부수적인 일들 즉, 그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가 행하는 개인정보들의 수집, 추적에 대해 약관이나 관제법규에 정한 것에 따라 자신의 정보가 일정도 내에서 사용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를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당초에 목적하였던 행위 즉, 대금의 지불, 물건의 판매, 서비스의 제공 등의 정보제공에 대한 대가를 제공하는 것 과 이를 위해 수반되는 개인 정보들의 취합과 관리 등을 포함한 선의의 목적을 달

19) S. D. Warren & L.D. Brandeis, "The Right to Privacy", 4 Harv. Law Rev., 1890. p.193.

20) William L. Prosser, "Privacy", 48 California Law Rev., 1960. p.389.

성하기 위한 제 활동 이외에는 어떠한 불법행위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포함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이런 정보제공을 받는 자들의 관리에 있어 발생하는 과실이나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등의 고의에 의해 종종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만일, 개인정보를 수집, 축적, 이용하는 자가 개인정보를 고의나 과실로 유출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업자보다는 그 개인정보의 주체인 각 개인들의 사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받을 수 있으며, 더욱이 경제적인 혼란과 개인의 신용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 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거나 내지는 이미 사용된 후에도 개인의 정보가 유출되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전자상거래의 확산과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무엇보다도 사전에 개인정보를 완벽히 보호하는 기술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전력하여야 만이 전자상거래의 미래가 보장 될 수 있을 것이다.

2 전자상거래에서의 개인정보에 관한 문제점

개인정보라고 하는 것을 보다 명확히 정의하면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²¹⁾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개인정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인으로 개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개념인 것이다. 즉, 이미 사망한 개인이나 또는 법인 및 기타 단체에 관한 정보는 제외²²⁾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수집 및 관리, 이용되는 모든 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우선 법에 정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아닌 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따른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개인정보의 주체로부터 아무런 사전 동의 없이 이를 제3자로부터 유·무상으로 제공받아 이를 사용하는 경우의 문제, 세 번째는 공개된 개인정보라 할지라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하고 이용하거나 이를 판매한 경우의 문제, 네 번째는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고 있는 자의 영업을 양수도하거나 합병 등 사업주체의 변경이 있을 경우의 문제, 다섯째는 한 개인이 제공한 정보를 관련사나 제휴사에서 개인정보를 공유하는데 따른 문제 등이 있을 수 있다.

또, 일상생활과 직접 연관된 문제점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자상거래라고 하는 것은 현금을 직접 교환하지 않더라도 경제활동과 관련된 금융거래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구매나 결제 의사를 가지고 개인정보를 제시하면, 이것이 은행이나 신용판매회사 등의 금융기관에 의해 처리되어지는 것인데, 이러한 전자상거래의 편리하고 효율적인 기능이 있는가 하면, 이에 따른 문제점도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경우라도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이뤄지는 행위는 반드시 그 족적이 컴퓨터-데이터 시스템에 남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국, 예전에는 물품의 구매나 서비스의 구매 또는 거

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6항 ‘개인정보’의 정의를 따른 것이며, 이외에 전자상거래에 직접 연관되는 법은 아니지만, 1994년 제정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도 개인정보를 이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22) 한국전산원, “정보사회의 정보이용자 권익보호방안” - 개인정보보호를 중심으로 - (NCVII-RER-97090) 1997. 12. p.34.

래 등에서 이뤄지는 대가의 지불 등은 일회성으로 이뤄지는 것이었던데 반해 지금은 거래의 흔적이 데이터베이스에 남겨져 이를 관리하게 되어 있어 이를 이용하는 사업자는 고객의 구매 활동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고, 또 이에 맞는 마케팅전략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즉, 여러 가지의 개인정보가 컴퓨터에 기록되고, 이것을 조작 반복해서 이용하면 할수록 그만큼 더욱더 많은 개인정보가 컴퓨터 시스템을 장악하는 자에게 집적²³⁾되게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더군다나 이와 같이 집적된 개인정보는 전자상거래를 이루는 모든 계약에 연관되어 있는 시스템 제공자, 신용정보제공자, 계약의 이행을 위한 물류업자를 포함한 전자상거래의 구성에 관계된 자들에게 제공되어지거나 공개되어지므로 만일 원할 경우 이것은 충분히 조합이나 결합되어 또 다른 형태의 개인정보 제공에 사용될 수도 있는 상황을 초래 할 수도 있는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수 밖에 없는 것이며, 개인정보의 보호의 의의는 바로 여기에 있다할 것이다.

IV. 선진국과 국내의 개인정보 보호 비교 및 대안

1. 선진국의 개인정보보호 현황

1) 독일

독일은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규를 민법과 일반거래약관법과 같이 일반적인 법규에 의해 다루면서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여 왔다. 그러나 독일에서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이 요구되게 되었다. 개인정보와 관련하여서는 1970년대 초에 공포된 주정보보호법과 그 직후 인 1977년 1월 27일에 연방의 연방정보보호법에 개인관련 데이터의 보호를 위한 형벌규정이 새롭게 수용되었다.²⁴⁾

독일은 '데이터처리에 있어 개인에 관한 데이터의 남용방지에 관한 법률(데이터 보호법)'을 70년대 말에 제정하여 공공부분과 민간 부분에 대한 개인정보를 보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컴퓨터에 의한 처리인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축적 및 처리되는 개인정보 시스템을 그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다. 단,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되는 것이 아니거나 자동데이터처리에 의한 것이 아닐 경우나 보도(報道)를 위해 사용되는 개인정보의 사용에 대해서는 데이터보호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는 의무를 제외하고는 이 법의 적용을 예외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²⁵⁾ 뿐만 아니라 이 데이터보호법의 총칙에서는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에 공통적으로 법률에 명시되어 있을 경우나 개인의 서면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 수정권,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봉쇄할 권리와 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또,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그 직무의 수행과 관련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가공하거나 공시, 또는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개인의 비밀보장 및 개인정보의 목

23) 엘빈토플러, 「제3의 물결」, 매일경제신문사, p. 340.

24) 백광훈, 전개서, 129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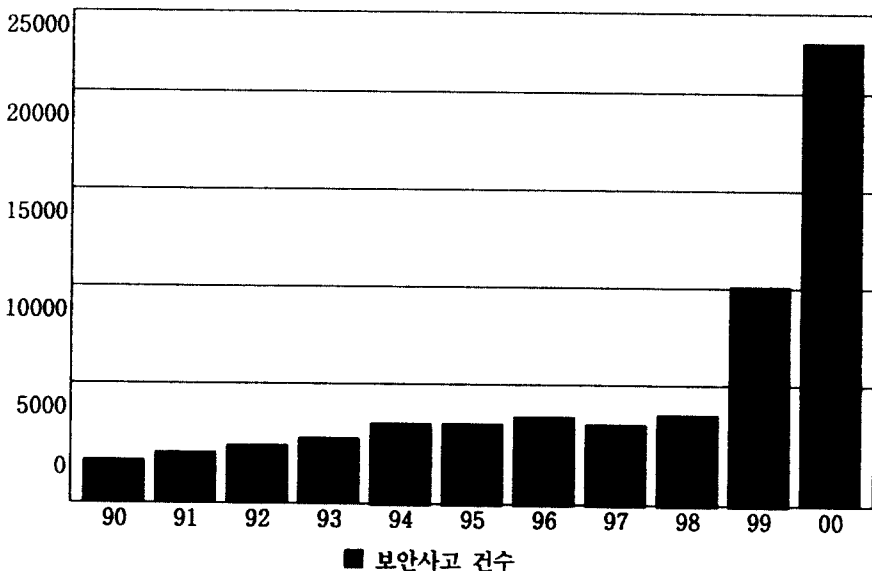
25) 한국전산원, "정보사회의 정보이용자 권익보호방안" - 개인정보보호를 중심으로 - (NCAVII-RER-97090) 1997. 12. p.46.

적의 사용금지를 규정하는 동시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을 원칙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1997년 제정된 '정보통신서비스법(통합멀티미디어 법)'에서는 위와 같은 정보보호의 영역을 멀티미디어부문까지 확장하였고, 텔레뱅킹이나 쇼핑 및 원격학습이나 근무 등에 있어 멀티미디어의 응용을 촉진하도록 하였고, 반면에 불법적인 내용이나 음란물 등의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세부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정보보호법'을 제정하였는데 이 법에 의할 경우 개인 자신 또는 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거나 이용의 접속을 증대하는 자연인, 법인 또는 인적집단인 서비스 제공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이용되거나 정보통신서비스의 수요자인 자연인, 법인 또는 인적집단인 이용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개인에 관한 정보를 수집, 가공,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미국

미국 정부는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1997년 7월 '전자상거래의 세계화를 위한 프레임워크(A Framework for Global Electronic Commerce)'²⁶⁾ 발표에서 인터넷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매우 중요한 요소로 판단하였다. 컴퓨터 보안사고는 <그림 1>²⁷⁾과 같이 최근 수년동안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미국은 미국내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아 보안문제에 대하여 종합적인 컨설팅에 종사하는 기관인 컴퓨터응급대응팀(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 CERT)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그림 1> 컴퓨터 보안사고 건수



26) '지구촌 전자상거래 기본계획' 라고 하기도 함, 해석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음.

27) 이충열, "1990년대 미국의 정보산업 및 전자상거래 발전 전략에 대한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연구회시리즈 01-03, 2001. 12. 30, 104면.

컴퓨터응급대책팀의 자료에 따르면 컴퓨터응급대책팀에 보고된 컴퓨터 보안사고는 1990년 242건에 불과하였으나 1995년에는 2,412건으로 증가하였고, 1998년에는 3,734건, 1999년에는 9,859건, 2000년에는 21,756건으로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또한 2000년 2월 야후를 비롯한 대표적인 인터넷 포털 사이트가 해커에 의하여 일시동안 운영이 정지된 이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약 80%의 기업이 전자상거래 확산의 가장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인터넷 보안문제를 선정하였다.²⁸⁾ 미국정부는 전자상거래 프레임워크에서 인터넷 보안에 대하여 밝힌 것처럼 정부와 민간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미국정부가 정보보안에 민간의 역할을 강조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²⁹⁾ 첫째, 이 분야의 기술이 매우 빠른 속도로 전개되기 때문에 정부가 효과적으로 기술의 발전을 쫓아갈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둘째, 개별 인터넷 웹사이트는 보관하는 정보의 종류나 성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정부가 일괄적으로 개입하여 보안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보안 시스템은 정보의 종류에 따라 신축성 있게 수립되어야 하는데 정부의 경직적인 행동양식에 비추어볼 때,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개별 웹사이트는 개인이 소유하는 것이므로 이들의 보안문제는 개별 웹사이트 소유자가 해결하여야 하는 문제가 된다. 개별 웹사이트는 기업이나 소비자가 각자의 이윤극대화 혹은 효용극대화를 위하여 제작하는 소유물이므로 이에 대한 보안이나 관리는 소유자가 하여야 한다. 이처럼 미국은 정부와 민간간의 상호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2000년 1월 정보시스템 보호를 위한 국가전략을 발표하였다.

2.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 현황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에 개인정보보호의 기본 개념을 언급한 조항으로 제10조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가진다는 조항과 동법 17조에 있는 모든 국민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을 두고 있으며 여기에 기초해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구체적인 법은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있으며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2000년 6월 발표하였다.

단행 법률로는 정보처리 주체가 공공기관인 경우에 적용되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1994)과 신용기관인 경우 적용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1995)이 있다. 그러나 이들 법률은 각각 공공기관과 신용기관만을 대상으로 할 뿐 상거래를 행하는 민간기업이 소유한 개인정보는 규제대상으로 하지 않았다. 그러나 2000년 1월 1일부터 정부는 지금까지 공공기관에 대해서만 정보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등을 제한해오던 것을 지난 98년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내년부터는 통신사업자 등 민간 업체와 개인에 대해서도 제한할 수 있게 확대했다. 보호대상인 개인정보 범위는 특정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물론 가족사항, 재산상태 학력, 병력, 통신내용 소비성향이나 취미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정부가 확정한 개인정보 보호체도의 핵심은 본인으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얻어야만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28) Mann, Catherine, Global Electronic Commerce,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2000.

29) 이충열, 전계서, 91면.

전파할 수 있게 한 점이다.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당사자는 일단 동의한 이후에도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도 있다. 이와 함께 당사자는 어느 때나 관련 정보를 열람하고 잘못된 내용이 있을 경우엔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는 기업 또는 타개인은 당사자의 동의를 얻기 전에 수집자, 수집목적, 전화번호, 연락처, 이용자의 권리 등을 알려주거나 이용약관에 명시해야 한다. 기업 또는 타개인이 당사자의 동의 절차를 거쳐 수집한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고지한 수집목적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제3자 제공이 금지된다. 또 목적을 달성한 이후에는 해당정보를 즉시 파기하도록 의무화돼있다. 수집목적과 달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려 할 때는 다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이 같은 보호체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부 장관이 정보를 수집하는 기업 또는 개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 보호규정을 위반할 때는 무거운 벌칙이 내려진다. 수집목적과 다른 용도로 개인정보를 사용하거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 또는 두절하는 경우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밖의 다른 규정을 위반할 때도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밖에도 무역업무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 18조, 19조에서도 문서 및 정보의 관리 및 공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3. 개인정보보호의 강화를 위한 대안

1) 법적인 대안

그 동안의 프라이버시권을 보장하던 것에서 더욱 발전된 시스템을 마련하여 개인정보에 대해, 정보의 주체인 개인이 가지는 이익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책을 강구해야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우선 전제로서 검토되어야 할 과제로서, 프라이버시 내지는 개인의 데이터 보호를 위해, 새로운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³⁰⁾.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OECD의 이사회권고안이 채택되고, 또한 미국과 EU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제기준을 채택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그것을 수용하는 “국내법”을 제정하여야 할 상황에 처해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급격히 증가하게 될 전자시스템계약에 의한 사적거래분야에 있어서도 자기화 되고 시스템에 통합된 개인정보 취급에 대해서 각종의 문제나 분쟁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고 있으며, 그 경우의 당사자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거나 또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불비가 없게 하기 위해, 새로운 입법조치를 강구해야 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필요를 반영한 새로운 입법조치를 하는데 있어, 국제적인 동향을 감안하고, OECD 이사회 권고회에서 제시된 제 원칙과 미국과 EU간 개인정보 보호지침 등의 국제기준을 고려해야 할 것이고, 이외에도, 개인에게 개인정보 시스템으로의 액세스 허용을 법제도로써 보장할 필요가 있음과 동시에, 개인정보시스템의 주체와 권리관계를 법률에 의해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개인정보 시스템의 주체가, 개인정보를 수집·추적·이용하는데 있어 행위원칙을 법률에 의거 확립할 필요가 있으며, 개인정보 시스템의 주체가, 개인정보를 관리하는데 있어, 정보 관리체제의 기준을 법

30) 이학승, “전자상거래 계약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에 있어 법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권, 제2호, 1999. 12. 17.

률에 의거 확립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취급에 대해, 정보의 주체인 개인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나, 당해 개인이 고충을 입었다고 주장한 경우를 위해, 법률에 의거 책임관제를 명확히 하거나, 또 고충처리를 위한 체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정보의 주체인 개인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정보를 타인이 수집·축적·이용하는 것에 대해, 자기의 인격적 이익과의 관계에서 막대한 손해는 입을 수 있어, 이러한 점에 대해서 타당한 이익균형을 이를 필요가 있는 가운데서 또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만전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특별히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2) 전자 기술적 대안

전자상거래의 대표적인 네 가지 특성을 들자면, 첫째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 둘째 전자화된 정보를 근간으로 한다는 것, 셋째 네트워크를 이용한다는 것, 넷째 사용자들의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³¹⁾. 또한 인터넷이 본격적으로 상거래 목적으로 사용된 이후로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의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소비자 신뢰라 할 수 있다.³²⁾ 이와 같은 특성들과 신뢰성 때문에 전자상거래에서 있어 정보보호의 기술적인 면,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즉 전자상거래에서의 기술적인 것은 보안으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할 수 있다. 보안에는 기술적으로 시스템 보안과 네트워크 보안으로 나눌 수 있으며 여기에 정책적 보안이 지원된다고 하겠다. 우선 시스템 보안은 크게 서버보안, 트래픽보안, 바이러스 대응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서버보안은 사이트 내 각 서버의 보안 취약점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체제를 말하며, 트래픽 보안은 인터넷을 통한 사이트 접근 시도에 대한 탐지 및 필터링 체계이며, 바이러스 대응은 바이러스의 침투에 대한 것을 뜻한다. 현재의 기술은 어떠한 보안 체계도 완벽하다고 볼 수가 없다. 따라서 전자상거래에 있어서는 관리자가 가능하면 관리비가 저렴하고 편리성과 함께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많은 단계의 보안 계층을 가지는 것이 좋다. 네트워크 보안은 보안상의 위협 및 공격으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ISO 7498-2에서 인증(Authentication), 접근제어(Access Control), 데이터 기밀성(Data Confidentiality), 데이터 무결성(Data Integrity), 그리고 부인부채(Non-repudiation)서비스를 제시하고 있다.³³⁾ 인증은 제3자가 타인을 사칭하는 데이터를 생성할 수 없어야 한다. 접근제어는 사용자의 신분이 확인된 후에 그 사용자가 명시된 자원(Resource)에 대하여 접근할 자격이 있는가를 점검하고, 어떤 유형의 접근동작을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허락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무결성은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중인 데이터는 중간에 제3자에 의해 변경되지 않았음이 증명 가능하여야 한다. 부인부채는 데이터의 전송 사실을 부인할 수 없어야 한다. 네트워크의 보안의 기본은 암호화이다.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를 전송하기 전에 그 내용을 암호화하여 통신 당사자 이외의 제3자가 볼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능을 하는 암호화 기반기술을 이용하여 보안의 효율성을 높이고, 상대방을 인증하는 응용기술이 더욱 발전하여야 한다. 더불어서 정책적인 보안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정책적 보안은 기술적인 보안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정책적 보안의 범위는 적용된 도구와 기술들에 대한 관리체계, 인증체계, 제도적

31) 이영수, 「전자상거래론」, 형설출판사, 2002. 07. 30, 349면.

32) 임호섭, 김종기,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 신뢰의 결정요인”, 한국정보시스템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2000. 3. A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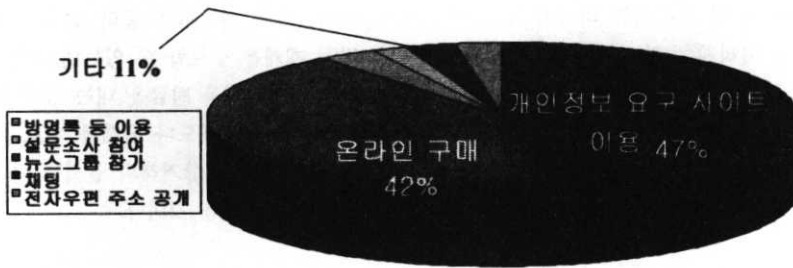
33) 윤광운·김철호, 「전자상거래개론」, 삼영사, 2001. 05. 25, 404면.

구매자와 판매자에 대한 보호 체계 등을 포함 한다. 따라서 전자상거래에서는 이용자들의 신뢰와 인정을 하는 기관의 선정, 운영, 인증서 관리체계, 인증기관간 상호 인증 업무 연동 등의 정책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정책적인 법과 제도가 발전 보완 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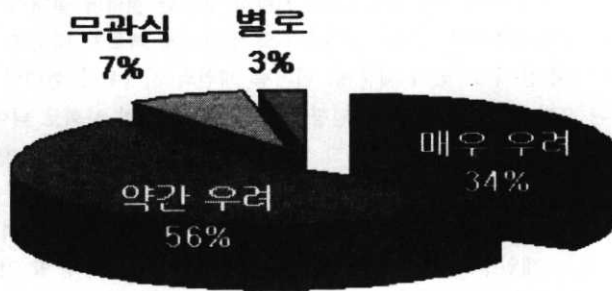
3)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대

비밀 정보를 얼마나 안전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은 컴퓨터 보안관련 분야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문제이다³⁴⁾. 그러나 사회적 인식은 전자상거래의 기술의 발전과 이용자들의 수요 급증에 비하여 아래의 <그림 2>, <그림 3>과 같이 매우 낮은 실정³⁵⁾이다.

<그림 2> 인터넷 사용시 삼가는 사항



<그림 3>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온라인상의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



미국은 이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꾸준히 이용자들에게 대한 교육 전략을 추진하였다. 그 이유로는 첫째, 전자상거래가 최근 급격히 증가한 거래방식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많은 소비자들

34) 박소영 외2, "가중치를 갖는 비밀분산법", 한국정보과학회, 정보과학회논문지 : 시스템 및 이론, 제29권 제3·4호 2002년 4월

35) 박영우, "개인정보 보호법규 해설", 한국정보보호센터, 2001. 3. 30. 12-13면

이 이에 대한 적절한 지식을 보유하지 못하고 거래에 임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사실이다. 둘째, 소비자 자신이 온라인거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질 경우 분쟁의 소지가 크게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자신이 온라인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래의 이점과 문제점을 보다 정확하게 알 경우 실수를 저지르지 않고, 각종 사기 행위에 속지 않을 수 있게 된다. 셋째, 실제 분쟁발생 시에도 대안적 분쟁해결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면, 소비자들은 자신의 권리와 연관된 각종 사항을 정확하게 알아야한다³⁶⁾

미국은 이미 전자상거래의 역기능과 정보격차 해소에 대한 방법을 교육을 통하여 전 국민의 사회적 인식을 일깨워주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도 사회 캠페인이 필요하다. 사회 캠페인은 다른 캠페인과는 다른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³⁷⁾ 첫째, 사회 캠페인은 다른 캠페인과는 달리 교육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둘째, 사회 캠페인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예컨대 노상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 쓰레기통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쓰레기를 노상에 버리지 못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셋째, 법적 제재를 구사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안전벨트 착용 캠페인을 시행하면서 만약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내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안전벨트 착용을 규제할 수 있다. 넷째, 사회 캠페인을 통하여 태도나 행태를 재보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평가 작업을 할 수 있다. 이처럼 사회 캠페인을 한다면 상거래의 질서뿐 아니라 가장 염려되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인터넷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개인정보가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일종의 개인의 사생활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개인의 자유와 복지에 기본이 되는 권리로 헌법에도 보장된 권리가 침해 받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개인정보가 전자상거래에서 보장되어야만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 할 것이다. 더욱이 전자상거래에서의 정보는 전파속도로 엄청나게 빠르게 때문에 불과 몇 초에도 개인의 정보가 타인에게 유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처럼 개인의 사생활이 현대에 이르러 인간의 기본권 중 하나로 규정된 프라이버시권한은 디지털광속경제 혹은 정보화 사회로 나아감에 따라 개인의 프라이버시 권한의 중요성이 더욱 확대 되어가고, 여기에 전자상거래의 확대로 인해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또한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이러한 개인정보들이 무분별하게 유출되고 이용됨에 따라 컴퓨터 범죄나 그 밖의 심각하게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개인정보의 관리는 개인정보의 보호라는 측면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이러한 개인정보의 보호문제는 나라마다 개인정보 보호의 규제 수준이 달라 이러한 정보들이 국경을 이동하는 경우 규제의 수준을 둘러싸고 통상마찰의 일환이 되기도 한다. 우리나라도 개인정보 보호문제는 통상문제와 프라이버시 보호와 맞물려 중요한 국면에 와있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들에 대한 인식을 기초로 하여 프라이버시의 개념 및 이론의 변화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이러한 변화를 기초로 우리나라도 시대적 조류에 맞게 그리고 전자거래 활성화를

36) 이충열, "1990년대 미국의 정보산업 및 전자상거래 발전 전략에 대한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연구회시리즈 01-03, 2001. 12. 30, 91면

37) 이수범, "사이버 공간에서의 청소년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사회 캠페인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 01-R26, 2001. 12. 30. 22-23면.

위해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입법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OECD 이사회 권고 안이 채택되고 또한 미국과 EU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제기준을 채택기로 합의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그것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적절한 국내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입법을 하는데 있어서도 법적 규제 대상이 되는 정보의 처리 형태를 굳이 컴퓨터 처리된 정보만으로 국한할 경우에는 문제점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어느 정도 가공되고 수집 및 처리된 개인정보까지도 보호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시스템업자나 사업자 및 운영자들은 어떠한 경우라도 정보수집의 목적을 철저히 설정하고 공표, 천명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반했을 때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벌칙을 마련해야만 한다. 뿐만 아니라 직접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취급하는 자 이외에 개인정보의 이동과정에 이를 도용하거나 유출시켜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는 등의 피해사태를 막기 위해 반드시 정보의 원 제공자에게 사업자간을 포함한 일체의 관계를 통한 개인정보의 이동이나 제공에 대해서는 사전에 원 제공자에게 동의를 구하는 방법이 강구되어야만 할 것이다. 또,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일정기간을 넘겨 사실상 사용되지 않는 개인정보들에 대한 폐기절차도 명확하고 신뢰성 있게 마련되어야만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방법들이 구체적으로 개선되거나 마련되는 것이 급속히 고도정보화 되어가는 우리 사회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정보보호를 보장해주는 가장 절실하고 사실상 필요한 방법일 것이다. 이와 함께 법과 제도가 날마다 변화하고 발전하는 기술과 정보서비스로 이루어진 정보사회에 시의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에 대해 앞에서 논하였는데, 이것은 법·제도 뿐 아니라 전 사회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개선해가기 위한 사회적 계몽 즉, 캠페인이 선행되어야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캠페인은 공익광고와 같은 방법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그 내용은 인간존중의 기본인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공공의 이익과 복지, 질서를 실현하는데 모두가 참여하는 활동이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전자상거래의 기본법으로서 민법 등 관련법규에 관한 해석의 변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법률의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부분을 고찰한 후 제외국의 입법례와 이론을 참조하여 지속적인 입법 활동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전자상거래의 특성이 기존의 민법과 상법 등 상사법 관련 법규들 위에서 전자상거래상인, 인증, 지불체계, 암호체계, 소비자보호, 조세문제로 나누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법규의 체계적인 제정과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³⁸⁾

참고문헌

- 김동석,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적 고찰”,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2000.
 박소영 외2, “가중치를 갖는 비밀분산법”, 한국정보과학회, 정보과학회논문지: 시스템 및 이론, 제 29권 제3·4호 2002년 4월
 박영우, “개인정보 보호법규 해설”, 한국정보보호센터, 2001. 3. 30
 백광훈, “인터넷 범죄의 규제법규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00-16,
 서유창, “개인정보보호법 : 재정배경과 시행성과”, 수사연구, 1996. 4,
 엘빈토플러, 「제3의 물결」, 매일경제신문사,

38) 김동석,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적 고찰”.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2000, 결론부분

윤광운·김철호, 「전자상거래개론」, 삼영사, 2001.
이대기의 3명, “국내 정보보호관련 법규 분석”, 정보보호학회지, 제12권 제4호, 2002.08.
이수범, “사이버 공간에서의 청소년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사회 캠페인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 01-R26, 2001.1
이영수, 「전자상거래론」, 형설출판사, 2002.
이재규 외 4명, 「전자상거래 원론」, 법영사, 2002, 제3판.
이충열, “1990년대 미국의 정보산업 및 전자상거래 발전 전략에 대한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연구회시리즈 01-03, 2001.12.30,
이학승, “전자상거래 계약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법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권, 제2호, 1999.12.17
임호섭, 김종기,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 신뢰의 결정 요인”, 한국정보시스템학회 추계학술발표 논문집, 2000, 3 A1.
정보통신부, “전자상거래 촉진방향”, 2002, 10, 5.
_____, 「정보통신백서」, 2001, 2001년.
최영호, “정보범죄의 현황과 제도적 대처 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8.
한국전산원, “정보사회의 정보이용자 권익보호방안” - 개인정보보호를 중심으로 - (NCAVII - RER - 97090) 1997. 12.
한겨레신문, 1994년 6월 24일 17면

Grabosky/Peter N./Smith, Russel G. "Crime in the Digital Age," Transaction Publishers. The Federation Press, 1998, 3
Hyun Chon Lee, The new era of Televersity and Andraversity in the Campusless Society: Virtual university and its implication in Korea , Europea Academia conference, Sweden, 1999
Mann, Catherine, Global Electronic Commerce,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2000.
OECD, Guidelines on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border Flows of Personal Data, Paris 1980
S. D. Warren & L.D. Brandeis, "The Right to Privacy", 4 Harv. Law Rev., 1890.
William L. Prosser, "Privacy", 48 California Law Rev., 1960.

www.keb.or.kr

www.kiisc.or.kr

www.mic.go.kr

<http://safe.cpb.or.kr/textdata/HOME PAGE/200104/0100074/2001.htm>

http://www.ned.co.kr/SITE/data/html_dir/2002/08/20/200208200102.asp (내외경제 사설)

<http://www.ohmynews.com/>, 2002/10/16, 강우영.

http://www.hackersnews.org/data/2002/09_1/0920_10.html, 송재영기자, 2002. 9.20.